

#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 1660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2일  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 제6조제1호 중 ‘관람’은 그 사전적 의미가 ‘연극, 영화, 운동경기, 미술품 따위를 구경함’으로 시민청의 이용자를 수동적으로 ‘보는’ 행위에 제한하여 실제로 시민청의 이용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‘이용’으로 변경함.

## 2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안 제6조제1호의 시민청 이용을 금지하는 ‘관람’에 지장을 주는 사람을 ‘이용’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수정함(안 제6조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호 중 “관람”을 “이용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 수 정 안  |
|--|---|--|
| <p>제6조(이용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는</u> 이용을 금지한다.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</u></p> <p>2. <u>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| <p>제6조(이용의 금지) -----<br/>----- <u>사람은</u> -----.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<b>관람</b>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| <p>제6조(이용의 금지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<b>이용</b>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|

# 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청(市民廳)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2.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6조(이용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는 이용을 금지한다.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</u><br/><u>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</u></p> <p>2. <u>위험물이나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</u><br/><u>품을 소지한 자</u></p> <p>3. <u>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</u><br/><u>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</u><br/><u>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| <p>제6조(이용의 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은 이용을 금지한다.</p> <p>1. <u>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,</u><br/><u>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</u><br/><u>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</u><br/><u>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</u><br/><u>하는 사람</u></p> <p>〈삭 제〉</p> |